
코로나19 대응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표준 매뉴얼

제2판
(2022. 7. 18.)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의료안전예방국 의료감염관리과

[일러두기]

○ 법적 근거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호) 제1호가목에 따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이에 따라 대응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중증 고위험집단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사례 증가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감시·조사 표준 매뉴얼 필요

○ 목적

- 발병률, 중증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대상 적시에 표준화된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는 현장 활용 매뉴얼 제시

○ 대상

-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 ③ 장애인복지시설

○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 (추진 방향) 예방, 감시, 신속 대응,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시설-시군구/보건소와 정보 공유체계 유지하고, 시·도는 보건소 활동 지원 계획 마련 후 지원
- (구성 요소)
 - 시·군·구 및 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
 - 시·도 단위 감염예방관리 지원 기구
 - 시·도 및 권역 단위 집단발생 감염취약시설 현장조사·대응 지원팀
- (업무 흐름)
 - [예방] ⇄ [정보공유·감시] ⇄ [집단발생 인지] ⇄ [상황평가·기획] ⇄ [현장조사] ⇄ [후속조치]

○ 집단발생 시설 조사 및 대응

- (예방) 요양·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 현황점검 및 감염예방 교육 관리
- (정보공유·감시/집단발생인지) 관할지역 감염취약시설 현황파악, 감염병 발생 정보 상시 공유체계 구축 및 유지, 기초정보 수집
- (상황평가·기획) 기초정보 바탕 상황평가 회의 및 조사 계획 수립
 - 확진자/접촉자 분리, 추적검사, 물자·후송 및 감염관리 지원 등
- (현장조사·대응) 현장 전파위험요인 최소화, 안정적인 확진자/접촉자 감염관리를 위한 후속조치 조정 및 시행, 역학정보관리
- (후속조치) 확진자 발생 현황점검·재평가, 계획 이행 상황 모니터링

○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 학회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 법령명 약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개정사항
I. 개요	개정	법적 근거 추가
II.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신설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상세안내
III. 대응체계	개정	시도 업무 중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확진자 발생 현황 통계관리 추가 안내
IV. 집단발생 시설 조사대응 절차	개정	시도 업무 중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확진자 발생 현황 통계관리 추가 안내
	개정	단계별 기관별 세부역할 중 예방, 현장조사·대응, 후속조치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시군구 소관 명확화
	개정	현장조사·대응 관련 업무 중 타 기관 협조 범위 안내
V. 현장조사 및 대응	개정	동일집단관리(코호트) :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확진자 전원 조치에 대한 추가 사항 (확진자 진료 가능 의료진 있는 시설의 경우, 자체 치료 가능)
부록	신설	부록 2.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양식)(별첨엑셀활용)
	개정	부록 3.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점검(양식)
	개정	부록 4.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대응 체계 점검표
	신설	부록 5.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통계 관리(양식)

[목 차]

I. 개요	1
1. 법적 근거	1
2. 추진배경	1
II.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2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2. 정신건강증진시설	2
3. 장애인복지시설	2
III. 대응체계	3
1. 추진방향	3
2. 대비·대응체계 구성	3
IV. 집단발생 시설 조사대응 절차	7
1. 조사대응 흐름	7
2. 단계별 기관별 세부역할	7
V. 현장조사 및 대응	9
1. 조사 및 대응	9
2. 동일집단관리(코호트)	11
부 록	13
1.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성 현황(양식)(별첨엑셀활용)	13
2.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양식)(별첨엑셀활용)	14
3.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점검(양식)	15
4.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대응 체계 점검표	16
5.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통계 관리(양식)	17

I 개요

1. 법적 근거

- 코로나19는 '19년 12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방역 상황 변화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으로 대응함 [근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호) 제1호가목]

2. 추진배경

-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지속 발생 중
-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예방, 감시 및 조사 등 역학대응 ▶ 조치 필요

▶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시 현장대응 실무매뉴얼('22.2, 중수본), '요양시설 집단감염 발생시 현장대응 실무매뉴얼('22.2, 중수본)',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3판('22.4.25)',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 제3판('22.5.4) 참고

▶ 향후 지자체용 대응지침에 포함하고 관련 지침 통일성 유지 예정

II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과 입원 보호병상(폐쇄병동) 운영 ▶

▶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등 제외

-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전수
- (정신재활시설)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태 시설 ▶

▶ 해당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 쉼터(아동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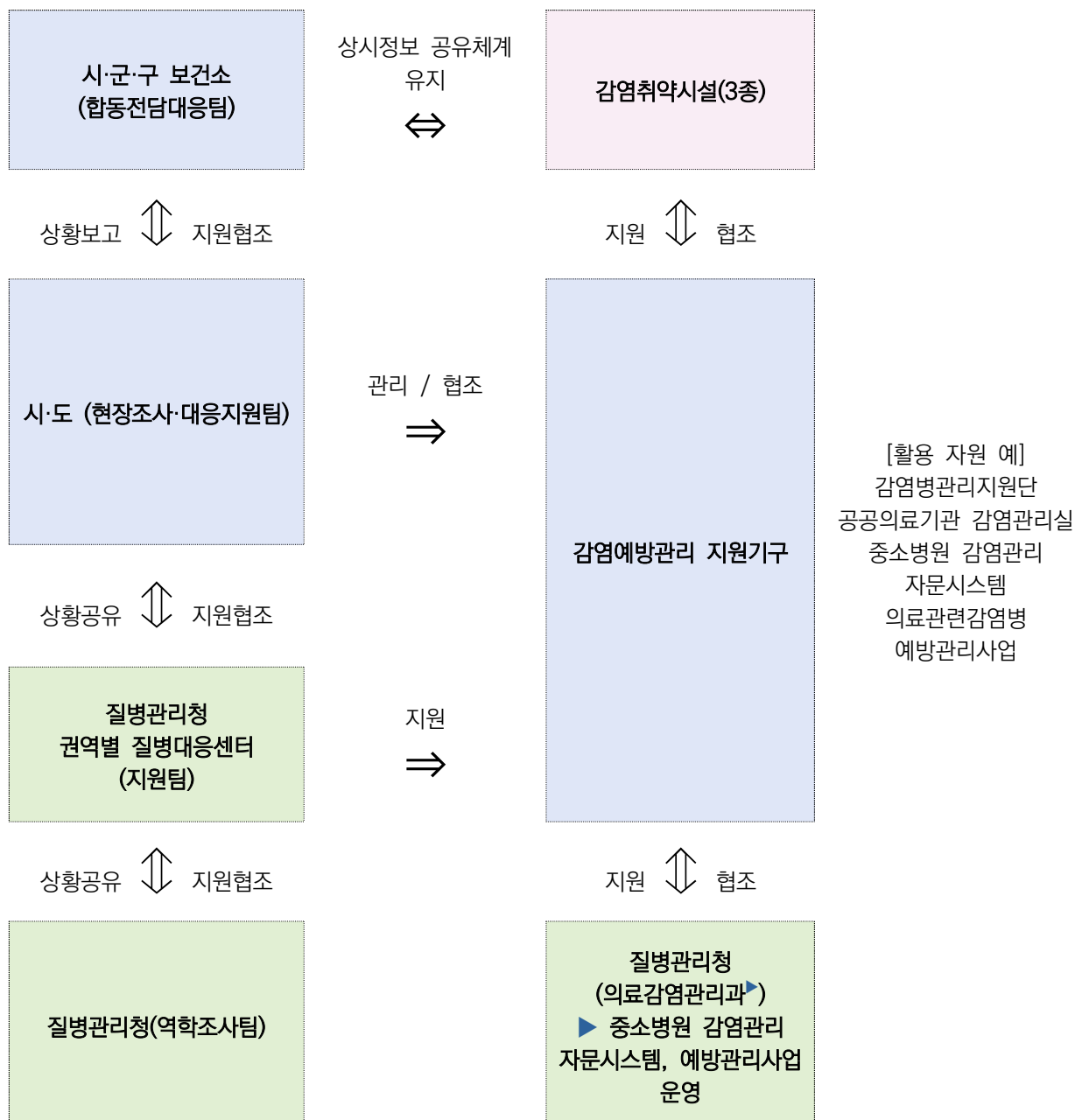
▶ 기관의 개설·이전·폐업 등으로 인한 목록 변경사항에 대해 수시 조정

Ⅲ 대응체계

1. 추진방향

- 예방, 감시, 신속 대응,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해당 시설-보건소와 정보 공유체계 유지
하고, 시·도는 감시, 예방, 역학조사, 후속조치 등 보건소 활동 지원 계획 마련 후 지원

2. 대비·대응체계 구성



4 :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표준 매뉴얼

- (감염취약시설) 시설정보 및 확진자 기초정보 등 수집·공유, 확진자 발생 보고(관리부서,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 감염취약시설(3종) 전담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팀 구성·운영

- ▶ (평시) 시·군·구 감염취약시설 담당부서와 시설 및 인적 현황 등 정보 공유 및 상시 모니터링, 방역물자 지원 등
- ▶ (대규모 집단발생/확진자 지속발생) 현장 역학조사 및 대응, 역학정보 등록 및 관리, 시도 지원 요청 및 시설 지원·관리계획 마련

시·군·구 합동전담대응팀	세부 내용
구성	▶ 역학조사관, 감염취약시설 담당부서 실무자, 정보관리, 검사지원, 기타 물자/행정 지원 - 관할 시설 현황 고려, 반드시 시군구 관련 부서 실무자 포함 팀 구성
역할	▶ 관할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 현황 파악 ▶ (정보공유) 시설별 전담 실무자 지정 및 연락체계 유지 (1명당 시설 최대 10개소 관리 권고(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감시) 선제검사 현황, 집단발생 상황 모니터링 ▶ (집단발생 대응) - 확진자/접촉자 관리(분리 및 추적검사) 기준 마련 - 검사·방역물자·치료제·후송 지원 체계 마련 - 초기 현장조사, 위험평가 및 후속조치 - 필요시 시도에 현장대응 및 감염관리 지원 요청
운영	▶ 평시 정보 공유, 감시는 전담실무자 중심 대응 ▶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이 전담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집단발생 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으로 확진자(재감염 포함)가 발생하여 현장대응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담팀 단위로 대응 - (예시) 동일층 기준 역학적 관련사례가 구성원의 10% 이상 발생시 또는 역학적 관련성 있는 확진자가 2주 이상 발생 시 등)

○ (시·도) 시·군·구 감염취약시설 합동전담대응지원팀, 시·도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확진자(종사자 및 입소자) 발생 현황 통계관리

- ▶ 현재 운영중인 권역/시·도 단위 코로나19 감염병대응협의체와 연계하여 활동
- ▶ (평시)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현황 감시, 감염예방관리 교육 훈련
- ▶ (시·군·구 요청/심층조사 필요시) 후속조치 및 조사·분석 지원

시·도		세부 내용
전담대응 지원팀	구성	▶ 역학조사관, 감염취약시설 담당부서 실무자, 정보관리, 기타 행정 지원 - 관할 지자체 규모 고려하여 팀 구성 운영
	역할	▶ 관할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 현황 파악 ▶ (정보 공유) 시군구별 전담 실무자 지정 및 연락체계 유지 ▶ (감시) 선제검사 현황, 집단발생 상황 모니터링 ▶ (집단발생 대응 지원) - 위험도 평가, 후속조치 계획 마련 - 방역물자, 치료제, 후송 지원 - 전파위험요인, 환기 상황, 백신/치료제 효과 평가 등 기획역학조사 수행 - 필요시 질병관리청 권역센터에 현장대응 지원 요청 - 필요시 시도 감염예방관리지원 기구 현장점검 조정 ▶ (정기적 현황 평가) - 지역내 관련 기관/부서(시군구, 지원기구 등)와 지원 및 유행 대응 결과 평가
	운영	▶ 평시 정보 공유, 감시는 전담실무자 중심 대응 ▶ 시군구 요청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획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팀 단위로 대응
감염예방관리 지원기구	구성	▶ (관련기구)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시도 공공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자원 활용 - 사업참여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원 가능 ▶ (인원) 2인(최소 1명, 감염관리전문가로 구성) 1조 - 관할 지자체 규모 고려하여 조별 담당 권역 지정
	역할	▶ (평시) 보건소 자문, 시설 담당자 교육·훈련, 점검 ▶ (집단발생시) 시도 전담대응지원팀 요청에 따라 현장 점검, 감염관리세부계획 마련, 유행기간 동안 주기적 점검 -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 및 예방관리사업 : 현장 발생 상황에 따라 감염관리 방법 교육·훈련 제공

6 :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표준 매뉴얼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시·도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지원팀 구성·운영

- ▶ 현재 운영중인 권역/시·도 단위 코로나19 감염병대응협의체와 연계하여 활동
- ▶ (평시)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현황 감시
- ▶ (시·군·구 요청/심층조사 필요시) 후속조치 및 조사·분석 지원

질병대응센터 전담대응지원팀	세부 내용
구성	▶ 역학조사관, 전담실무자, 기타 행정 지원 - 관할 시도 규모 고려하여 팀 구성 운영
역할	▶ 관할 지역 내 감염취약시설 현황 파악 ▶ (정보 공유) 시도별 전담 실무자 지정 및 연락체계 유지 ▶ (감시) 선제검사 현황, 집단발생 상황 모니터링 ▶ (집단발생 대응 지원) - 역학정보 및 위험도 평가, 후속조치 계획 마련 - 전파위험요인, 환기 상황, 백신/치료제 효과 평가 등 기획역학조사 수행(지원) - 필요시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반에 현장대응 지원 요청 ▶ (정기적 현황 평가) - 권역내 관련 기관/부서(시도, 지원기구 등)와 지원 및 유행 대응 결과 평가
운영	▶ 평시 정보 공유, 감시는 전담실무자 중심 대응 ▶ 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획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팀 단위로 대응

○ (질병관리청)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대응 기준 마련 및 점검, 감염취약시설 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 관리, 지자체 및 질병대응센터와 정보 공유 및 현황 감시

- ▶ (질병대응센터 요청/심층조사 필요시) 후속조치 및 조사·분석 지원

Ⅳ 집단발생 시설 조사대응 절차

1. 조사대응 흐름

단계	기관	역할
예방	▶ 시·군·구/취약시설 ▶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요양·정신병원 등 대상 감염예방관리 현황점검 ▶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예방 교육 관리
인지	▶ 시·군·구/취약시설	▶ 기초정보 수집·정리 ▶ 상황공유
상황평가 및 기획	▶ 시·군·구 ▶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상황평가회의 진행 ▶ 확진자·접촉자 관리 및 현장조사 계획 논의
현장조사 및 대응	▶ 시·군·구, 시·도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발생현황 모니터링 ▶ 전파 및 중증최소화를 위한 조치(지원 조정) ▶ 전파 및 임상적 특성 분석
후속조치	▶ 시·군·구 ▶ 시·도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 시·도(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확진자·접촉자 관리 ▶ 감염관리, 점검 ▶ 진행사항 모니터링

2. 단계별 기관별 세부역할

○ (예방) 요양·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 현황점검 및 감염예방 교육 관리

- ▶ 시·군·구/보건소 :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관리 현황점검, 감염관리 교육 및 행정지도
- ▶ 시·도 :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관리 현황점검 지원, 감염관리 교육 및 행정지도 협조,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확진자(종사자 및 입소자) 발생현황 통계관리▶
- ▶ (기본) 구축된 감시 결과 및 통계는 분기(3/6/9/12월) 초마다 감염취약시설 대응 현황 작성
-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요청 시 제출
-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감염예방관리 점검 및 교육 지원·협조

☞ 참고자료

- [부록 1] 감염취약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성 현황(양식)(별첨엑셀활용)
- [부록 2]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양식)(별첨엑셀활용)
- [부록 3]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점검(양식)

○ (정보공유·감시/집단발생인지) 관할지역 감염취약시설 현황파악, 감염병 발생 정보▶ 상시 공유체계 구축 및 유지

- ▶ 감염병발생신고서, 기초역학조사서, 집단발생시설 구성원, 환경조사, 노출력 등

8 :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표준 매뉴얼

- ▶ 감염취약시설 : 시설 및 확진자 기초정보 수집·공유
- ▶ 시·군·구 : 감염취약시설 담당부서(실무자)와 기초 정보 공유 및 보건소와 합동전담대응팀 구성 참여
- ▶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등
- ▶ 보건소 : 합동전담대응팀 구성·운영, 집단발생 시설 및 확진자 발생현황 정리·보고, 상황평가회의

○ (상황평가·기획) 기초정보 바탕 신속한 상황평가 회의 및 조사 계획 수립

- ▶ 보건소 : 상황평가회의 주관
- ▶ 위험평가, 확진자·접촉자 관리 및 현장조사 계획 논의(시·군·구 시설 담당부서 참여)
- ▶ 시·도 : 방역상황에 따라 확진자·접촉자 관리 및 현장조사 지원,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협조·운영
-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필요 시 현장조사 및 위험평가 지원

○ (현장조사·대응) 신속한 현장조사 및 대응조치

- ▶ 시·군·구/보건소 : 발생현황 확인, 초기 위험요인 분석, 전파 및 임상적 특성, 집단사례 역학정보 등록, 모니터링 계획, 감염관리 평가·대책 등
- ▶ 감염원 및 감염경로 추적, 시군구 시설 담당부서 및 관할 타 기관(경찰청/소방청 등) 협조
- ▶ 시·도 : 현장조사 및 대응 지원, 역학정보 관리, 대내·외 협조
- ▶ 감염원 및 감염경로 추적 지원, 위험요인 심층분석, 확진자 전원, 방역물자 추가 지원, 시설 담당부서 및 타 기관(경찰청/소방청 등) 협조
-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필요 시 현장조사 및 위험평가·분석 지원

○ (후속조치) 집단발생 대응 및 지속관리

- ▶ 감염취약시설 : 감염관리 컨설팅을 통한 시설 감염예방관리 역량 유지
- ▶ 시·군·구/보건소 : 확진자·접촉자 관리 및 감시 지속, 추가 확진자 지속 발생(장기화) 시 중간점검 및 상황 재평가
- ▶ 시·도 : 발생 시설 감염관리 지속 감시, 필요 시 대내·외 추가 지원·협조
- ▶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 필요 시 현장조사·위험평가·분석 지원, 역학정보 평가·관리

V 현장조사 및 대응

1. 조사 및 대응

○ (조사내용)

- ▶ 기본 준비사항 및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조사(발생률, 감염경로 조사 등), 정보 수집 및 DB 현황 확인·조정
- ▶ 필요 시 집단사례 DB는 상황 목적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
- ▶ 현장조사를 통해 노출 상황, 입원환자 상태, 시설·환경, 운영 인력에 대해 평가한 뒤 향후 관리 계획 수립
- ▶ 감염병발생신고서, 기초역학조사서, 집단발생시설 구성원, 환경조사, 노출력 등

[현장조사 양식 예시]

	A	B	C	D	E	F	G	H	I	J	K
1	기본정보		시설 이용 정보				확진자 정보				
2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	신분상세	근무/입원 장소	증	입원병실	확진여부	치료제투여여부	치료제종류	치료제투여일
3									ex)예/아니오	렘데시비르/팍스 로비드 등	2022-03-22
4											
5											
6											
7											
8											
9											

[감염취약시설 현장조사 및 조치]

집단 유형

감염취약시설 3종

조사 대상

-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②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 ③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아동 포함))

역학 조사

※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일상 감시체계 유지

- ① 집단발생 인지 시 상황 평가
- ② 발생경위/발생현황파악(지역별, 시설별)
- ③ 시설/검사현황 파악(시설 단위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적용(예정))
- ④ 시설위험도 평가

조치

- ⑤ 노출자 조치계획 수립
 - 관리방식 (격리 권고, 분리 관리 등)
 - 전수검사/선제적 주기적 검사
- ⑥ 반드시 집단사례조사서 작성·공유 및 관리 종료 후 종결보고서 작성·공유 (관리 및 대응 분야(시설·환경, 감염관리, 치료제) 전후 평가 포함)

10 :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표준 매뉴얼

▶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예시

- (위험도 평가) 노출기간, 범위, 강도
- (접촉자 평가) 연령, 기저질환, 독립적인 자립 생활력, 협력업체 및 인적교류 현황 등
- (시설 평가) 시설 내 확진환자 및 접촉자 분산 배치를 위한 가용 공간
- (시설 운영능력)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인력, 감염관리 수준

○ (접촉자 분류) 증상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 접촉자 범위 고려사항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접촉자 관리) 시설 점검 후 확진자 발생 공간을 확진자 관리공간 및 접촉자 관리공간으로 각각 별도의 공간을 분리하여 지정·관리

- ▶ 접촉자 관리공간은 다시 접촉 강도에 따라 분리(밀접/일상)하여 운영
- ▶ 환기가 잘 되며 동선분리가 원활한 관리공간▶을 우선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동선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에 따른 감염예방 및 환경관리, 환기 등을 완료하여 청결관리 공간으로 지정·관리

- ▶ 각 병동 간 사용 공간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 필요

▶ 검체채취장소

-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 채취, 자연환기인 경우 가급적 실외▶에서 검체 채취

- ▶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 또는 환기가 잘되는 넓은 공간으로 주변에 사람의 이동이 통제되는 장소

○ (구역분리) 시설 내 확진자 발생 공간, 오염 및 감염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청결구역”, “준청결구역”, “오염구역”으로 공간을 구별

- ▶ (공통)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준수

- ▶ (오염구역)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사용한 세탁물 보관 장소 등은 청결구역과 구분

- ▶ 폐기물 또는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을 만질 때에는 4종(KF94 등급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호구

- ▶ (준청결구역)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의 중간구역▶으로 보호구 탈의실 등 설치

- ▶ 보통 ‘전실’을 의미하며 개인보호구(4종)의 제공, 안전하게 탈의, 소독 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여야 함

- ▶ (청결구역) 종사자 행정 업무구역 등으로 활용

- ▶ (폐기물 등 환경관리) 생활 및 의료폐기물▶은 관할 지자체(보건소)에서 수량 및 수거일 등 전반적인 관리 및 관련 물품 지원

- ▶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2. 동일집단관리(코호트)

-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확진자 전원 조치 우선 고려**, 불가피한 경우 차선으로 동일집단관리 조치 진행
- ▶ **(지자체별로 전원 가능한 시설이 제한된 경우)** 확진자를 진료할 의료진이 지정되어 있는 시설 (의료기관 및 기동전담반 등)에서는 경증환자는 자체 치료, 그 외는 전원 치료 가능

○ (관리원칙·주의사항·관리계획)

- ▶ 원칙 : 개인 분리 관리(1인1실), 불가능할 경우 동일집단관리를 하되 노출 수준이 동일한 노출자들을 최소한으로 구성 관리
- ▶ 주의사항 : 개인 분리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 노출위험평가 후 관리계획(분산관리, 주기적검사, 감염 관리 등) 마련,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상황 재평가 및 관리 계획 보완▶
- ▶ 시설 내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시·도/시·군·구 방역책임관(역학조사관)이 위험도 재평가 및 관리계획 보완(필요시 권역 질병대응센터 협조요청)
- ▶ 운영·점검·관리▶ : 시설의 장이 책임운영, 지자체는 정기적인 감염관리 및 조치 등 점검·지원
- ▶ 관리 기준, 주기검사 계획, 환기, 인력 운영 방안, 확진자 이송·전원, 감염관리 기본사항(보호구 착용, 동선 설정, 폐기물 관리, 소독 등) 현장 교육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

○ (환자관리) 환자 마스크 착용 관리 강화, 발열·호흡기증상·설사증상 발생 유무 등 환자 증상 모니터링(2회/일)

- ▶ 주기적 검사 : 접촉자로 분류된 종사자는 가능한 근무 배제하고 모든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사 시행
- ▶ 시설내 확진된 무증상 또는 경증의 종사자는 본인 동의하에 위험도평가 등 방역상황에 따라 동일 집단격리 시설내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함(출퇴근 불가)
- ▶ 진단검사 주기·방식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지자체(방역관)에서 판단 시행
 - (예시) : 1일차(신속항원) → 2일차(신속항원) → 3일차(PCR) 순 검사

14 : 감염취약시설 예방·감시·조사 표준 매뉴얼

부록 2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양식)(별첨엑셀활용)

구분	시도	시군구	시설유형1	시설유형2	시설/상호명	집단발생 구분	확진자명	성별	생년 월일	확진일	검사일	확진년도	확진주차	신분1 (확진자 집단내 신분)	신분2 (종사자 신분)	치료 장소	항바이 러스 치료제 종류
		띄어쓰기 금지	감염취약시설 대분류 (띄어쓰기 금지)	감염취약시설 중분류 (띄어쓰기 금지)	띄어쓰기 금지	개별 집단		남 여		0000-00-00	0000-00-00	=year (확진일 cell) 함수 사용	=weeknum (확진일 cell) 함수 사용	입소자 종사자	종사자인 경우 세부 직업	자택 시설	
1	충남	00시	요양병원·장기요양 기관	요양병원	가나다 요양병원	개별	가나다	남	760101	2022-02-26	2022-02-25	2022	9	종사자	의료인 (의사, 간호사)	자택	
2	경남	00군	요양병원·장기요양 기관	노인요양시설	가나다 요양원	집단	나다라	여	860202	2022-05-11	2022-05-09	2022	20	종사자	사무직	자택	
3	충남	00시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가나다 정신요양원	개별	다라마	남	660303	2022-02-26	2022-02-25	2022	9	종사자	비의료인 (물리 치료사 등)	시설	
4	강원	00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가나다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집단	마바사	여	770404	2022-03-11	2022-03-10	2022	11	입소자		시설	
5	강원	00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가나다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바사아	남	880505	2022-04-11	2022-04-09	2022	16	종사자	요양 보호사	시설	
6	강원	00시	장애인복지시설	피해장애인쉼터	가나다피해 장애인쉼터	집단	사아자	여	990606	2022-06-11	2022-06-10	2022	24	입소자		시설	

부록 3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점검(양식)

▶ 본 양식은 의료법 제47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6조에 따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점검·독려를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점검 양식				
조사자	소속:	시·도:	시·군·구:	
	성명:	연락처:	조사일: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답변자:	(소속:)
I.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 예 ☐ 아니오(미구성 사유 :)				
2. 감염관리위원회 역할 ☐ 병원감염(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 ☐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 병원감염(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그 밖에 병원감염(의료관련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3-1. 감염관리위원회 위원수 : 명 (위원장 포함)				
3-2. 의료기관의 장이 위원장인지 여부 : ☐ 예 ☐ 아니오				
3-3. 감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감염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1. 감염관리실장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감염관리실 미설치)		
2. 진료부서의 장		☐ 예 ☐ 아니오		
3. 간호부서의 장		☐ 예 ☐ 아니오		
4. 진단검사부서의 장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진단검사부서 미설치)		
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예(상세:) ☐ 아니오		
6. 의료기관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 예(상세:) ☐ 아니오		
4. 감염관리위원회 연간 개최 횟수				
4-1. 2021년: 회/년 4-2. 2022년: 회/년				
II. 감염관리실 설치 및 운영				
5. 감염관리실 설치 여부 ☐ 예 ☐ 아니오(미설치 사유 :)				
6. 감염관리실 업무 ☐ 병원감염(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 병원감염(의료관련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감염관리실 인력 유무 ☐ 예 ☐ 아니오(미구성 사유 :)				
감염관리실 인력		현황		
1. 의사		☐ 전담 명	☐ 겸임 명	(주당 근무시간: 시간)
2. 간호사		☐ 전담 명	☐ 겸임 명	(주당 근무시간: 시간)
3.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전담 명 (직종:)	☐ 겸임 명 (직종:)	(주당 근무시간: 시간)
8.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감염관리 교육시간 준수여부(2021.12.31. 기준)				
☐ 준수 ☐ 미준수 (미준수 해당 인력:)				

부록 4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대응 체계 점검표

▶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통합본)」 참고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및 대응 체계 점검표					
* 점 검 일 : 2022 년 월 일			* 점검자/확인자 :		
구분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비고
대응 체계 마련	협력체계	비상 연락체계는 현재 기준으로 마련되어 게시 (의료기관-관할 보건소-관할 시·군·구 및 시도)			
	대응팀 구성	코로나 19 대응팀 구성, 업무분장 명시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성명 :
		병원 내 대책, 확진자 발생 시 이송계획 수립			
감염 예방 및 관리	입원환자 관리	발열, 기침 여부 등 건강 상태 모니터링·기록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경우 1인실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환자와 환자, 환자와 간병인 간 최소 1m이상 거리 유지, 접촉 최소화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관리 구역은 일반환자 구역과 구분			
	시설관리	의심환자를 위한 예비병실(가능한 1인실) 확보			확보 병실 :
		예비병실 동선 및 오염 구역 설정			
		병원 공조/환기 실행(재순환 여부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시설·설비 및 물품 공급·관리 체계 마련			
	환경관리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수칙 홍보(게시물 부착 등)			
		환경청소, 소독 관련 내부지침 마련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마련			
	방문객 관리	방문객에 대해 호흡기 증상 확인 및 방역수칙 이행			
	직원관리 (간병인 포함)	일일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 확인			
		감염관리수칙(손위생, 마스크 착용 등) 교육			
		근무 중 상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하기(출·퇴근시, 환자 접촉전·후, 환자 분비물 처리 후)			
		직원 간 접촉 최소화, 1m 이상 거리유지			
		본인 또는 가족이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			

부록 5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관리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통계 관리(양식)

○ 확진자 통계관리 양식(예)

- 일별(또는 주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기관, 정신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

구분	시도별(17)	기관명	전일(또는 전주) 누적확진자		신규 확진자		누적 확진자	
			환자	종사자	환자	종사자	환자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서울특별시	XX병원	100	50	10	10	110	60
정신요양시설	부산특별시	XX시설						
정신재활시설	경기도	XX시설						

- 월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기관, 정신요양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

구분	'22년 3월		'22년 4월		'22년 5월		'22년 6월		누적 확진자	
	환자	종사자	환자	종사자	환자	종사자	환자	종사자	환자	종사자
총계	19,997		9,736		1,393					
계	16,441	3,556	7,665	2,071	1,108	285				
정신의료기관	14,802	3,046	6,992	1,865	881	265				
정신요양시설	1,310	332	530	134	217	14				
정신재활시설	329	178	143	72	10	6				

* 누적확진자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전체 확진자